

原告が販賣한 장갑이 本件特許権을侵害했다고 한被告의 葉書內容은 虛偽事實을記한 것으로被告의 行爲는 不正競爭行爲가 되었다는 事例

〔大阪地裁 59. 10. 26 判決；昭和 57年(ワ) 8863號〕

1. 事件概要

原告は競馬騎手用 장갑을 포함한 스포츠용 장갑의販賣를業으로하고,被告は競馬騎手用 장갑을 포함한 競馬用品의販賣를業으로하고 있다.被告は原告が販賣한 競馬騎手用 장갑의 바닥面에 使用한 布地(以下 A號 物件이라 한다)는 本件特許権을侵害한 것이라는 内容을記載한 葉書를原告의去來先으로 있는 競馬用品販賣店에發送했다. 이기에對해原告는 A號 物件은 本件特許發明의 技術的範圍에 屬하지 않으므로被告의 葉書는虛偽事實을記載한 것으로서被告에對하여前記行爲의禁止 및 損害賠償을請求했다.

2. 判決의要旨

判決은 下記의理由에 따라原告의請求를認定,被告에對해서前記行爲의禁止 및 損害賠償을命令했다. A號 物件은兩面編組織의 메리야스編布에작은突起를붙이는데loop를벗김에따라pile調編loop를使用하고있는것에對해서本件特許發明은고무編組織의메리야스編布에작은突起를붙이는데tuck編과함께tuck編糸를斜線上에交差시켜그交差點을突起시키는것에있고兩者間에는技術思想으로서의差異가認定되었다.

被告는本件發明은메리야스編布에작은突起를나오게하여고무等을塗布한것에特許性

이 있는것을主張하고있지만本件特許發明에서는작은突起를만드는方法에對해서請求範圍에記載되었고必須要件으로놓고이것을無視한것은認定되지않는다.또고무編組織과兩面編組織으로는書證및證人의證言에依하면通常用語의使用例로서도區別해서使用되고있는것이認定되지만本件公報中「고무編組織」의用語가兩面編組織을包含한狀態가되고記載또는이것을示唆하는記載도認定되지않으므로兩面編을갖고고무編과同一視하는것은안된다.

따라서A號 物件은本件特許發明의 技術的範圍에 屬하지 않는 것으로 있고 이것을利用한本件장갑이本件特許権을侵害한 것으로主張한被告의葉書內容은虛偽의事實을記載한것이라고하지않을수없다.

證人의證言에依하면原告는被告의葉書에따라A號 物件을使用的本件장갑의賣上이減少된것이認定되고原告는被告의不正競爭行爲에따라營業上の利益을害하게된것으로 말하는것이된다.그래서被告는A號 物件이本件特許發明의 技術的範圍에 屬한다고主張하고있는것은辨論의全趣旨에보다밝은것으로 있으므로被告는將來에같은形態의不正競爭行爲를行할可能性이있고이같은경우에는原告는營業上の利益에損害를끼친다고말한것이된다. *